

자주하는 질문(FAQ)



저공해조치 신청 및 접수 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각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공고 시기 및 세부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믹서트럭, 펌프트럭 등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건설기계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기계 DPF 사업이 중단된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및 그 외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하며
그 전까지는 **유예조치 절차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 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예조치 절차는?



지게차 전동화
가능한 모델이 무엇인가요?

전동화 개조가 가능한 대표적인 지게차 모델은 아래와 같으며,
차량의 연식·상태·세부 사양 등에 따라 실제 개조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게차 전동화 개조 사업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전동화 개조 가능모델

제조사	형식	원동기형식	제조사	형식	원동기형식	제조사	형식	원동기형식
대우 (두산)	D20S-3	DB33A / B3.3	대우 (두산)	LD30S-2	DB33 / 4BC2 / C240	클라크	GTS25D	4TNE94L / 4TNV98
	D25S-3						GTS30D	
	D30S-3		삼성/ 클라크	FX20D	AL30	현대	GTS33D	
	D33S-3			FX25D			20D	V3300
	D20S-5	FX30D		25D				
	D25S-5	FX203D		30D				
	D30S-5	FX253D		33D				
	D33S-5	FX303D	HDF20-II	4JG2PJ-06				
	LD20-2	DB33 / 4BC2 / C240	클라크		C20D		4TNE94 / 4TNV94L	HDF25-II
	LD25-2				C25D			HDF30-II
	LD30-2				C30D			HDF20-5S
	LD20S-2				C33D			HDF25-5S
	LD25S-2			GTS20D	4TNE94L / 4TNV98		HDF30-5S	

2026년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서



관련문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업체 연락처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전동화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에코앤드림	1644-0879
크린어스	1577-9014	세라کم	02-744-1777, 02-6929-1777
HK-MnS	070-4267-2736	HK-MnS	070-4267-2736
건설기계 장치부착(DPF)			
에코앤드림	1644-0879	세라کم	02-744-1777, 02-6929-1777
세라کم	02-744-1777, 02-6929-1777	HK-MnS	070-4267-2736

신청문의

신청 누리집 및 문의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저감사업 콜센터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2026년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서





저공해 미조치 시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사용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조치 완료 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

저공해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 기준은?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덤프트럭

도로용 건설기계

2005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사용제한 유예(유예확인서 발급조치)

지게차, 굴착기

비도로용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진행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I 조기폐차 지원사업

적용대상 및 지원금액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가목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2006년 1월 1일 이전 (5등급)	2009년 8월 31일 이전 (4등급)	기본보조금	추가보조금
덤프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만원	1억원	100%	200%(신차) 100%(중고차)

구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보조금	추가보조금
굴 착 기	16톤 미만	1,650만원	100%	200%(신차)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만원		
	33톤 이상	7,900만원		
지 게 차	9톤 미만	1,050만원	100%	200%(신차)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만원		
	18톤 이상	1억 2,000만원		

* 추가 지원금(저소음증·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절차

1

조기폐차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2

지원금액 확인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송부

3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 검사(www.escar.or.kr) 또는 현장검사(폐차장 입고 후 현장에서 차량상태 확인)

4

폐차 말소

정상가동 여부 확인 후 차량 말소

5

보조금 청구 및 수령

기본 보조금 청구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확인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4등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의 경우 사용제한 대상은 아니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원 대상임
※ 위의 보조금 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실 수령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됨

II 장치 부착, 엔진교체, 전동화 지원사업

적용대상 및 지원금액

장치부착

2005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7,101	462

엔진교체

2004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단위 : 천원)

구분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4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ED22	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	12,217	13,756	16,841	17,170	21,355	13,282	14,397	17,839	9,339	13,054	11,075

전동화

사업자 공도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지게차
(단위 : 천원)

구분	지게차 전동화 개조			
	2톤급			
	리튬이온 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리튬인산철 배터리 (에코앤드림)	리튬인산철 배터리 (세라캡)	리튬인산철 배터리 (HK-MnS)
장치가격 및 보조금	34,148	20,255	15,438	17,392

신청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건설기계 소유자

장치부착, 엔진교체,
전동화 개조 대상 선정
시스템을 통해 선정

지자체

저공해조치 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엔진) 안내
시스템의 신청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완료

제작사(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장치 부착, 엔진교체 및
개조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소유자-제작사(엔진교체·개조 사업자)

건설기계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개조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제작사(엔진교체·개조 사업자)

※ 로더 및 롤러의 경우 사용제한 대상은 아니며,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 대상임
※ '26년 기준 지원 단가이며 단가 재산정 등을 통해 금액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저공해조치를 위한 작업 외 별도 수리비나 취득세 등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